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00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만희
김형동 · 고동진 · 최보운
이헌승 · 윤한홍 · 강대식
조승환 · 진종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개인정보 보호에 전문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을 국무총리, 국회 교섭단체 등이 제청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생성형 AI를 포함한 신기술 발전 가속화에 대응하여 예방적 점검 기능 및 조사 역량 강화, 조사·처분 제도 정비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짐.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인공지능 등 디지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제청하는 위원 중 1명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5.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② -----
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	-----
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	-----
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	-----
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	-----
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	-----
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
임명 또는 위촉한다. <후단 신	-----
설>	-----. 이 경우 위
	원장이 제청하는 위원 중 1명
	은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
	털 기술 관련 전문지식을 갖
	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
	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③ · ④ (생 략)	<u>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u> ③ · ④ (현행과 같음)
-------------	--